

선거관리 시행 세칙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

선거관리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우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등 선거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절차 및 후보등록 신청서 등의 양식 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서)

- ① 입후보자가 임원 등의 후보등록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주주 50인~60인, 이사와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추천인이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추천서 보정을 통보받은 후보자는 5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③ 주주회원이 아닌 사람이 추천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과실로 본다.
- ④ 주주회원 1인이 동일한 종류의 임원 등 후보자에 대하여 복수로 추천을 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추천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임장)

- ① 투표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고자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수임자가 그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투표장소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그 투표권은 무효로 하며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한다.
- ② 위임장을 우편으로 접수시 위임장을 개별봉투에 담고 그 봉투 여러개를 박스에 담아 우체국 소포 또는 우체국 택배로 회사에 도착시킨 경우 박스에 소인이 있으면 봉투에 개별로 소인이 없어도 그 위임장은 유효로 한다.
- ③ 위임장은 선거일 3일전 17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 ④ 위임장의 위임인, 수임인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위임장의 일련번호와 선거인 명부의 성명이 틀린 경우 무효로 한다.
 2. 법인회원의 위임장 작성시 반드시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법인명만 기재할 경우도 인정한다.)
 3. 법인회원이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위임장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삭선을 하고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 주주) 법인인 주주회원은 추천 또는 투표 기타 위임을 할 경우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등의 후보자 등록) 임원 등의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등 후보 등록 신청서에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회원증 사본, 본인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확인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 신청서 등의 양식) 임원 등 후보신청서(별지1), 추천서(별지2), 위임장(별지3), 후보자 경력(별지4), 투표용지(별지5)등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제7조 (감사의 선출) 우리 회사의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질의, 회신)

- ① 주주회원이나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주회원이 후보자에 대하여 경력 등을 문의할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사항, 회사의 임원 및 공식기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

제9조 (보정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하자있는 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5일이내에 그 보정이 없으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선거관리 사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세칙

제1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사무직원을 파견 받거나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회사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3조 : 회사로부터 파견된 사무직원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